

제2회 원규심의위원회

2018. 4. 2.(월)

심 의 안 건

서울연구원

The Seoul Institute



순서

1. 연봉급산정규칙 일부개정(안)	1
2. 공무원운영규칙 일부개정(안)	3

연봉급산정규칙 일부개정[안]

1. 의결주문

연봉급산정규칙 일부개정(안)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사유

2018년 정규직 연봉 인상을 위한 ‘연봉급산정기준표’를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2018년 연봉인상률을 <별표 1> ‘연봉급산정기준표’에 반영
 - 2018년 인상기준 : 4.0%(등급상승 1.4% + 순수인상 2.6%) 이내
 - 2018년 연봉인상 적용 : 등급상승 + 1.38% + 241,000원
- ‘연봉급산정기준표’의 ‘연구원’ 기준 삭제
- ‘공무직’의 ‘연봉급산정기준표’ 신설

4. 시행일

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신구조문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연봉급의 책정) ① 직급·등급별 연봉금액은 <별표1>의 연봉급산정기준표에 따른 연봉액을 적용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[별표 1] 연봉급산정기준표 “생 략”</p> <p>※ 별도자료</p>	<p>제2조(연봉급의 책정) ① 직급·등급별 연봉금액은 <별표1>의 연봉급산정기준표에 따른 연봉액을 적용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표 1] 연봉급산정기준표 “생 략”</p> <p>※ 별도자료</p>

공무직운영규칙 일부개정[안]

1. 의결주문

공무직운영규칙 일부개정(안)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사유

공무직의 ‘연봉급산정기준표’를 연봉급산정규칙으로 이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공무직의 ‘연봉급산정기준표’ 삭제
 - 공무직의 연봉은 ‘연봉급산정규칙’에 따라 2018년도 연봉을 인상하여 3월 까지 소급적용하고 ‘공무직운영규칙’의 ‘연봉급산정기준표’는 삭제

4. 시행일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연봉급) ① 공무원의 연봉금액은 <별표1>의 연봉급산정기준표를 적용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[별표 1] 연봉급산정기준표 “생 략”</p> <p>※ 별도자료</p>	<p>제6조(연봉급) ① 공무원의 연봉금액은 연봉급산정규칙 제2조 제1항을 적용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[별표 1] (삭제)</p>